

2000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597
----------	-----

제출년월일 : 1999. 11. 1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기금조성

- '98 ~ '99 총 기금조성액 : 33,478,640 원
 - '98 ~ '99 법정기금조성액 : 31,961,000 원
 - '98 ~ '99 기금 이자수입 : 1,517,640 원
- 2000년 법정기금 예산액 : 16,537,000 원

3. 의결요청(안) : 덧붙임

2000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의 조성현황

년도별	재 원	조 성 액	기금관리방법	예치금융기관	비 고
계		31,961,000			
'98	고성군 당초예산	16,170,000	정기예탁 (이율 8.5%)	농협고성군지부	증식 및 사업비 충당용
'99	"	15,791,000	"	"	'99 12월중 예치예정

2. 기금의 조성계획

구 분	조 성 액	관 리 계 획
계	50,015,640	
기 조 성	31,961,000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
2000당초예산	16,537,000	'99.3.23 기조성된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신규예탁관리
기금운용수입	1,517,640	이자 수입으로 기조성된 기금과 통합예탁

3. 기금의 사용계획

가. 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 2)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 3) 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 4)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수 있다.

- 1)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 2) 재난관리법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기금의 운용방법

가. 기금은 고성군 금고의 이자률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다. 기금의 지출은 용도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비용의 일부를 용자한다.